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648
------------	-----

2019년 6월 14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5월 21일, 송아량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다. 상정일자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2019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아량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

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신설(안 제19조제1항제8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신설(안 제19조제1항제9호)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신설(안 제19조제1항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19. 5. 29 ~ 2019. 6. 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수정가결
 - 신설 제9호의 교통약자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동법 같은 조에서 국토부장관 및 시장, 군수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통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공사의 범위에 넣는 것은 맞지 않음.
 - 신설 제8호의 교통약자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약자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교통사업자의 의무이자 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신설

제10호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은
신설하는 제8호의 내용과 중복됨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시각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¹⁾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실태조사 등을 서울교통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²⁾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법 제25조³⁾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서울교통공사의 사업 범위에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법 제5조제1항⁴⁾ 등에서는 『도시철도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6호 (생략)

4)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동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7호⁵⁾ 및 10조⁶⁾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임산부 휴게시설,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등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1~4호선 구간의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표지판 등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점검용역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개선해오고 있으며, '20년부터는 1~8호선 전체 구간에 대해 점검 등의 관리를 계획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교통공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 사업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수송분담률⁷⁾은 38.9%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임산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동권 개선 및 교통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법 제25조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범위에 실태조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5) 제2조(정의)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6)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2018 서울통계연보」 지하철·철도 38.9%, 버스 26.1%, 승용차 24.3%, 택시 6.6% 순(2017년 기준 자료)

일부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를 제11호로 한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10.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11.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사업의 범위) ① (생 략) 1. - 7.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p> <p>② - ③ (생 략)</p>	<p>제19조(사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p> <p>8.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u>제11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u></p> <p>9.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u>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u></p> <p>10. <u>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 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u></p> <p>11.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